

교육발전연구원 규정

시행일: 2024.10.23.

제1조(명칭) 제1조(명칭) 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 부설 교육발전연구원(RIED: 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al Development, 이하 본 연구원 이라 한다)으로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, 교육발전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관장한다.

1. 교육학 및 교과교육학 이론 연구 개발
2. 교육학 및 교과교육학 관련 출판 및 학술지 발간
3.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및 유치 지원
4. 국내 및 국제 학술단체와 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 전개
5.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 관련 연구 및 지원
6. 교육성과의 측정평가 및 대학기관연구
7.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연구과제 수주
8.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4조(소재지) 본 연구원은 본교 내에 둔다.

제5조(구성) 본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연구원장 1명
2. 사무국장 1명
3. 연구원

제6조(기구) 본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

1. 운영위원회
2. 편집위원회

제7조(연구원장)

- ① 연구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.
- ② 연구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육대학원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유관 대학(원)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. 단, 연임 임명 시에는 대학(원)장 추천 및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8조(사무국장)

- ① 사무국장은 연구원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한다. 사무국장은 연구원장 유고 시 업무를 대행한다.

- ② 사무국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육대학원 전임교수 중에서 연구원장이 임명한다.
-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9조(연구원)

- ① 본 연구원에는 「부설연구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상임 연구원, 전문 연구원, 객원 연구원, 일반 연구원,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연구원 구성원의 구분 및 운영과 인사관리는 본교 「부설 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한다.

제10조(운영위원회)

- ① 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운영위는 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연구원장이 임명한 2인 이상의 위원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, 사무국장은 운영위 간사가 된다.
-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.
- ④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⑤ 운영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연구 및 학술 관련 사항
 - 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3. 본 연구원 규정의 개폐
 - 4. 산하 기구의 신설 및 폐쇄에 관한 사항
 - 5. 연구원 내 인사 관련 사항
 - 6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 - 7. 기타 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편집위원회)

- ① 본 연구원의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관掌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(이하 “편집위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편집위는 편집위원장과 함께 연구원장이 위촉하는 6인 이상의 국내외 각 분야의 전문 인사로 구성한다.
- ③ 편집위원장은 연구원장이 임명하되 연구원장이 겸직할 수 있다.
- ④ 편집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12조(학술지 발간)

- ① 본 연구원은 매년 2회의 학술지를 발간한다.
- ② 발행일은 각각 6월 30일, 12월 31일로 정한다.
- ③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투고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.

제13조(재정) 본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교내연구비
2. 대외학술연구과제 수주의 수탁금
3. 보조금 및 기부금
4. 기타 수입

제14조(회계)

- ① 재원에 따라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로 구분·운영하며, 교비 또는 대외과제·용역 수주 등에 따른 경비 집행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.
- ②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.

제15조(공간 등 반납) 본 연구원 폐쇄 시 공간과 기자재 등의 재산은 폐쇄 다음 날 내 본교에 반납한다.

제16조(보칙) 본교 「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규정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0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